【 11 】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년월일 2001. 4.27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수정이유

도시계획조례 제13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도심지내 위락시설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항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변경

□ 주요골자

가.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관하여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제4호 삭제(안 제13조제4호)

나.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건축제한을 위한 근거규정을 당초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제4호"로 하던 것을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로 수정(안 제13조의2)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13조의2제1항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제4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을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의 지구로 한다. 1.~3.(생략) 4.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 ---------- ---------. 1.~3.(원안과 같음) 〈삭 제〉
제13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제4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 숙박시설 및 제12호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②(생략)	제13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 ---------- ②(원안과 같음)
제35조(구성) ①~②(생략) ③위원회 당연직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담당업무과장과 군의회의원 2인이상 4인이하로 한다.	제35조(구성) ①~②(원안과 같음) ③(원안과 같음)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숙박시설 및 제12호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위락시설 이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중 "4이상"을 "2인이상 4인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제정 2000. 10. 27 조례3056호
개정 2001. 1. 8 조례308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도시계획은 도시기능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안전을 위하여 주민본위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3조 (주민의견의 청취) 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해당 도시의 시·군청 및 읍·면·동 게시판과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경관지구의 세분)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는 영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전통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의 유지가 필요한 지구
3. 수변경관지구 : 주요 하천·호수·해안주변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유지가 필요한 지구
4.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의 고층·고밀도개발을 방지하고, 양호한 주거지의 경관조성 또는 보호가 필요한 지구
5.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도시의 원경을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제1항 각호의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군조례로 정한다.

제5조 (개발촉진지구의 세분) ①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는 영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개발촉진지구 : 상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공업개발촉진지구 :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 : 첨단산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레포츠개발촉진지구 : 주민의 여가를 위한 레포츠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제1항 각호의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군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구의 지정)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등의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2001.1.8)

②제1항 각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군조례로 정한다.

제 3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7조 (설치)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①위원회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 (위원장등) ①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②위원의 위촉 및 해촉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①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제출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도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6조 (설치)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경기도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7조 (구성) ①기획단은 교통·환경·재정·도시행정·토지이용·방재·수리·정보통신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소속 공무원과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